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	2021. 10.					

2021년도

##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과업 개요

○ 건설사업관리: 하천환경정비 9.72km

용역 금액

○ 도 급 예 정 액: 일금 3,014,000,000원정



국 토 교 통 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 목 차

- I. 용역설계설명서
- II. 일반 과업지시서
- III. 특별 과업지시서
- IV.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V.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 계획
- VI. 설계예산서
- VII. 산출근거
- VIII. 위치도

# I. 용역설계설명서

# I. 용역설계설명서

##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을 원활히 하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등 포함)을 시행하고자 함

## 2. 과업의 범위

가. 사업명: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다. 위치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일원

라. 사업현황

- 제방보강 7개소 8,655m, 차전거도로 2개소 1,069m, 생태수로정비 1개소 618m, 교량신설 1개소 88.2m, 교량철거 1개소 422m, 폐기물 처리용역 1식 등

## Ⅱ. 일반과업지시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1.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1) 당해 공사시방서
-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3) 하천설계기준·해설
- 4)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 5)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7) 도로교 표준시방서 등

나. 건설공사 관계법령 등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하천법
- 3) 환경정책기본법
- 4) 환경영향평가법
- 5) 자연환경보전법
-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 7) 건설기술진흥법
- 8) 건설산업기본법
- 9) 산업안전보건법
- 10) 전력기술관리법
- 11) 문화재보호법 등

다. 관계지침 등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2) 하천기본계획
- 3)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 4)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5)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라.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마.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해당 공사의 설계관련 자료(실시설계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 발주 이전 단계의 현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 임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아. 해당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폐기물 배출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allbaro.or.kr>)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 5.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 가. 절차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분야별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나. 운영

- 1)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준공 시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기술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승인된 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가) 질병으로 인한 기술인 교체 시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대직근무)후 완치 시 원대복귀 근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

나) 퇴직으로 인한 기술인 교체 시

-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 내에는 교체 불가
- 계열사 기술인으로 취업 시 교체 불가

- 3)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안전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5) 책임기술인은 분야별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미 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한 실패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9)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가)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장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10) 시스템 입력 및 관리

가)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폐기물 배출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allbaro.or.kr>)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7.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8.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기술지원기술인은 수자원분야, 토질및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 시공분야, 조경분야, 환경분야에 각각 투입하여야 하며, 조정을 위해서는 우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Ⅲ. 특별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48개월(1,056일)로 한다.

#### 2. 설계변경조건

가.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중단 등으로 용역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다.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라.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 대가는 발주청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단 조정금액은 당초 인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산결과 감액이 발생될 시는 장래 전체분에 이월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당연도 및 전체계약분에서 감액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자.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감점대상이 된다.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4. 세부수행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 나. 문화재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전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사전 확인 후 공사착수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화재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시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 및 처리대책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문화재 발견 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신고기관: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신고 후 지자체 의견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나) 신고기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구비서류: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 첨부서류: ①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 ②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등)
- ③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 조사
- ④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⑤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

라) 신고방법: 해당 시군구(방문/우편/온라인)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화재청 처리결과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조사를 착수한다.

가) 중요 유물 아닐 경우: 공사 계속 진행

나) 중요 유물 경우: 문화재청 조사 처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 ※ 필요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반영.(조사 용역업체 선정→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다) 완료: 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확인 및 발주청 보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 ‘제111조(하자보수 지원)’를 따른다.

## IV.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 IV.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V. 과업 기간 및 투입 인원 계획

## VI. 설 계 예 산 서

2021년도

#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 □ 과업 개요

- 건설사업관리: 하천환경정비 9.72km

## □ 용역 금액

- 도 급 예 정 액: 일금 3,014,000,000원정
  - 공 급 가 액: 일금 2,740,000,000원정
  - 부가가치세: 일금 274,000,000원정



국 토 교 통 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 VII. 산출근거

## VIII. 위치도

□ 섬진강 구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